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529
----------	-----

제출년월일 : 1995. 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중전 시본청의 실·국·본부 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3.16 “지방자치법 제102(행정기구)조”가 개정되어 동사항이 조례에 명시토록 변경된 바, 동법의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1.1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국·본부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2실 9국 1 본부를 둬.(안 제2조)
- 나.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기획·조정, 평가·심사분석, 조직관리, 의회협력, 재정대책, 투자심사, 예산, 공기업, 자치법규, 소송사건, 전산, 통계,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3조)
- 다. 감사실은 시본청·소속기관·유관단체 및 구감사, 공무원비위조사 및 처리, 회계검사, 공무원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4조)
- 라. 내무국은 서무, 의전, 보안, 문서, 통신, 시험, 인사, 행정, 구역, 선거 및 국민투표, 새마을, 민원처리, 문화, 예술, 문화재, 체육,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5조)

- 마. 재무국은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품통제, 금융, 회계, 결산, 물품출납, 영선 및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6조)
- 바. 보건사회국은 사회복지, 구호·후생, 장애인복지, 노정,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7조)
- 사. 가정복지국은 노인·아동·영유아·여성·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8조)
- 아.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발전기획 및 수출진흥, 중소기업지원, 상업, 물가안정, 연료, 계량기, 전기, 공업, 광업, 특허, 공산품 품질관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양정, 잠업, 농축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9조)
- 자. 교통관광국은 교통, 운수, 차량,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0조)
- 차. 도시계획국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구획정리, 토지거래, 지적, 항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0조)
- 카. 환경녹지국은 환경보호, 청소, 녹지, 공원,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1조)
- 타. 건설주택국은 건설업, 건설공사용자재, 건설기계, 도로·교량·하천, 하수도·방재·주택·건축,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13조)
- 파. 소방본부는 소방, 재난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4조)
- 하.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제102조(행정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7조(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① 본청에 두는 실·과·본부는 조례로 설치하되, 실·국·본부의 설치범위와 명칭예시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1과 같고, 실·국 본부의 사무분장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담당관등의 설치)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 실·국·본부 하부조직 현황(별표3)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본부 설치)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환경녹지국·건설주택국·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평가·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및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등 법무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화 업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시본청·소속기관 및 유관단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자치구감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통신·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시험·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행정의 조정·육성·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5. 새마을·건전생활·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및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문화재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민방위·화생방·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실·국·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재무국) 재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입·세출총괄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통제 및 금융에 관한 사항
4. 물품(차량포함)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등 재산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등 영선에 관한 사항

제7조(보건사회국) 보건사회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장애인복지·구호·후생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의무·약무·방역에 관한 사항

제8조(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정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2. 부녀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기획 및 동향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상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 박람회에 관한 사항
5. 공업, 광업, 특허,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축·잠·수산업 및 양정·농축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관광국) 교통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하철(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수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입안·인가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5. 도심철도 이설 및 경부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토지거래 및 지적·향측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2. 일반폐기물, 분뇨·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등 청소에 관한 사항
3. 녹지조성 및 조경에 관한 사항
4. 공원·유원지·동식물원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업·건설공사용자재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2. 하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해예방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로·교량·가로등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급·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6.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경방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재난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제15조(담당관·과등의 설치) 담당관·과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 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① 별표1 실·국·본부의 설치범위·명칭예시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제7조제1항관련)

(1) 실·국·본부의 설치범위·명칭예시

구 분	실·국·본부 설치 범위	실·국·본부의 명칭 (예시)
서울특별시	15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도시계획국· 주택국·도로국·교통국·하수국·민방위국/소방본부
부산광역시	13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환경보전국·건설국·수업국·소방본부
대구·인천 광주·대전 광역시	12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 환경보전국·건설주택국·소방본부
경 기 도	12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행정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건설국·도시국· 민방위국·소방본부
강 원 도	11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행정국·지역경제국·산업국·건설도시국·민방위국 ·소방본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0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행정국·지역경제국·건설도시국·민방위국·소방본부
전라남도	11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행정국·수업국·지역경제국·건설도시국·민방위국· 소방본부
경상남도	12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행정국·수업국·지역경제국·건설국·도시국·민방위국 ·소방본부
제 주 도	10실·국· 본부이내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감리복지국·관광문화국·개발국·소방본부

10 (第39回 臨時會 - 本會議 第2次 別添)

(2) 과·담당관의 설치범위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설치 범위	70개 이내	56개 이내	47개 이내	45개 이내	43개 이내	43개 이내	49개 이내	44개 이내

충청도	충남도	전라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남도	제주도
43개 이내	44개 이내	43개 이내	46개 이내	44개 이내	46개 이내	33개 이내

비고 : 국제통상협력실을 포함한다.

② 별표 2

실·국·본부별 사무분장 예시(제7조제1항 관련)

실·국·본부별	사 무 분 장 (예시)	비 고
기획관리실	· 시도 행정의 기획·조정·조직관리(도를 제외한다)·실사분석·예산·투자심사·기술심사(특별시에 한한다)·결산·통계·조례·규칙의 심사·소송사건·법규의 편찬·헌법위(제주도에 한한다) 및 비상대책(도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시·도 광 통
감사실	·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시·도 광 통
내무국 (I)	· 서우·의견·보안·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세미물·선거·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민원처리·생활체육·기부금품 통제 및 영선에 관한 사항	특별시
내무국 (II)	· 서우·의견·보안·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세미물·선거·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생활체육·문화·예술·민방위 및 다른 실·국·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광역시 광역시 통
재무국	· 시세·세외수입·세무조사·공채·기부금품 통제·감동·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저문 및 지적(특별시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보건사회국	·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후에 관한 사항	광역시 광역시 통
보사환경국	· 의무·약무·환경보호·보건·위생·구호·후생에 관한 사항	특별시 광역시 통
가정복지국	·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	시·도 광역시 통
지역경제국 (I)	·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의 도입·인정·영지·농지개발·수리·잡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영업·공업·특허·전기 및 연료에 관한 사항	광역시 광역시 통
교통관광국	·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항	광역시 광역시 통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관리·시설계획·공원복지(특별시에 한한다)·산림·지방항공 및 지적(특별시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환경복지국	· 환경보호·청소·공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광역시 광역시 통
건설주택국	· 건축·주요·도로·교량·하천·방재·건설기계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연허·건설공사용자재·국토 및 자연지원의 보존·이용, 하수도에 관한 사항	광역시 (부산 제외)
소방본부	· 소방에 관한 사항	시·도 광 통

“별 표3”

실·국·본부 하부조직 현황

실·국·본부	담당관·과	계
계	6담당관 36과	136 계
기획관리실	기 획 담 당 관	기획, 의회, 조직관리, 평가, 부자심사, 시정연구
	예 산 담 당 관	예산1, 예산2, 공기업
	법 무 담 당 관	법제, 송무, 법제심사
	봉 계·전산담당관	전산지도, 전산개발, 전산관리, 봉계
	비상대책담당관	계획, 동원
감 사 실		감사1, 감사2, 감사3, 조사1, 조사2
내 무 국	총 무 과	서무, 의견, 인사, 고시, 통신
	시 정 과	시정, 지도, 여론
	사 회 진 흥 과	진흥, 자연보호, 건전생활
	시 민 과	문서, 민원, 여권
	문 화 체 육 과	문화, 예술, 문화재, 체육지원, 체육시설
	민방위 담당관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통제소
재 무 국	세 정 과	세정, 세무조사, 심사평가, 세외수입
	회 계 과	지출, 용도, 물자
	이 재 과	국유재산, 공유재산, 영선
보건사회국	사 회 과	사회, 장애인복지, 노정, 의료보장
	보 건 과	보건, 방역, 의약, 가족보건
	위 생 과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
가정복지국	가 정 복 지 과	가정복지, 아동복지
	부 녀 복 지 과	부녀복지, 생활지도
	청 소 년 과	청소년, 청소년시설

실·국·본부	담당관·과	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경제분석, 수출진흥, 중소기업지원
	상정과	상정, 박람회, 물가관리, 연료
	공업과	공단기획, 공업, 품질관리
	농정과	농정, 농산, 양정, 유통, 축정
교통관광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 교통시설, 교통운영
	교통지도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정비
	관광과	관광진흥, 관광지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시설계획과	시설계획,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도시개발
	지적과	토지관리, 지적1, 지적2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과	청소행정, 오수관리, 청소시설
	녹지과	녹지, 공원관리, 공원개발, 산림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	건설행정, 하천, 방재
	도로과	도로계획, 도로관리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지도, 택지개발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지도
	하수과	하수행정, 하수시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감찰, 장비
	방호과	방호, 예방, 소방교육, 지령실
	구조·구급과	구조, 구급

공보관 및 국제통상협력실 하부조직 현황

구 분	계
공 보 관	홍보기획, 홍보1, 홍보2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 통상협력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 3월27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월 14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1월 20일
3. 상정일자 : 제 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내무위원회 (1995. 2. 20)
상정, 심의, 유보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3. 27)
심의,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1. 제 안 이 유

종전 시분청의 실·국·본부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3. 16 “지방자치법 제102(행정기구)조”가 제정되어 동 사항이 조례에 명시토록 변경된바, 동법의 시행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 1. 1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국·본부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2실 9국 1본부를 둬.(안 제2조)
- 나.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기획·조정, 평가·심사분석, 조직관리, 의회협력, 재정대책, 투자심사, 예산, 공기업, 자치법규, 소송사건, 전산, 통계,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3조)
- 다. 감사실은 시본청·소속기관·유관단체 및 구감사, 공무원비위 조사 및 처리, 회계검사, 공무원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4조)
- 라. 내무국은 서무, 의전, 보안, 문서, 통신, 시험, 인사, 행정구역, 선거 및 국민투표, 새마을, 민원처리, 문화, 예술, 문화재, 체육,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5조)
- 마. 재무국은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품통제, 금융, 회계, 결산, 물품출납, 영선 및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6조)
- 바. 보건사회국은 사회복지, 구호·후생, 장애인복지, 노정,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7조)
- 사. 가정복지국은 노인·아동·영유아·여성·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

- 아.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발전기획 및 수출진흥, 중소기업지원, 상업, 물가안정, 연료, 계량기, 전기, 공업, 광업, 특허, 공산품품질관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양정, 잠업, 농축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9조)
- 자. 교통관광국은 교통, 운수, 차량,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0조)
- 차. 도시계획국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구획정리, 토지거래, 지적, 향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0조)
- 카. 환경녹지국은 환경보호, 청소, 녹지, 공원,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1조)
- 타. 건설주택국은 건설업, 건설공사용자재, 건설기계, 도로·교량·하천, 하수도·방재·주택·건축,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3조)
- 파. 소방본부는 소방, 재난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14조)
- 하.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현행 시본청의 실·국·본부기구와 그 사무분장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지방

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금년 1월1일자로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국·본부등의 기구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시본청에 2실 9국 1본부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였음. (안 제2조~제14조)

< 대전광역시 본청 행정기구 >

2 실	9 국	1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실 ·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무 국 · 재 무 국 · 보건사회국 · 가정복지국 · 지역경제국 · 교통관광국 · 도시계획국 · 환경녹지국 · 건설주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둘째, 시본청의 실·국·본부외에 과·담당관등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동규정 제9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15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정기구 운영을 위하여 지난 93. 3. 16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규칙을 조례로 제정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 1. 1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의 기준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만, 금번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진일보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령에서 행정기구의 범위를 규정화 한 것과 설치 및 폐지시의 내무부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다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정을 외면한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와 지나친 관여라고 판단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관련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는 즉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원칙때문에 위임범위내에서의 본 조례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안 제출이유는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규칙을 조례로 규정
○ 법개정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 운영에 문제없는지	○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문제 없음.
○ 현행기구를 늘리고 출일때의 절차는	○ 2실 9국 1본부만 조례로 규정하고 그외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함.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